##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18 발의연월일: 2025. 4. 29.

발 의 자:김원이·서삼석·위성곤

김남근 • 곽상언 • 이해식

서영석 · 김동아 · 김태선

이정문 · 이소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전기공급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전기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지원이 현행 100%에서 75%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25%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한전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로 인한 우려와 도서·벽지 지역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차질이 우려됨.

이에 현행법에 도서·벽지지역 전력공급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력공급의 공공 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0 조의2).

법률 제 호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전액을 지원한다" 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전기사업자가 사용	의한 지원)		
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u>지원할</u>	<u>전액을 지</u>		
<u>수 있다</u> .	<u>원한다</u>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